

의안번호	제 318호
의 결 연 월 일	2012년 월 일 (제 310 회)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2년 4월 30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18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2년 4월 30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방공무원법<법률 제10700호, 2011.5.23>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<대통령령 제23093호, 2011.8.22>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. (시행 : 2012. 5. 24)
- 이에 따른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 정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(별표)
 - 10급 폐지, 9급 비율 상향 조정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	10급
현 재	1%이내	7%이내	22%이내	22%이내	30%이내	18%이상
조 정	1%이내	7%이내	22%이내	22%이내	48%이상	
증 감	-	-	-	-	18%	△18%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 · 9급
비 율	7%이내	21%이내	35%이내	35%이내	2%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이내	7%이내	22%이내	22%이내	48%이상

3. 연구직 · 지도직 공무원

구 分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16%이내	84%이상	26%이내	74%이상

4. 소방직 공무원

구 分	소방정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이내	3%이내	6%이내	8%이내	14%이내	31%이내	37%이상

5. 별정직 공무원

구 分	4급상당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5%이내	24%이내	44%이내	15%이내	10%이내	2%이상

*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</p> <p><u>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</u> (제3조제2항 관련)</p>	<p>[별표2]</p> <p><u>지방공무원직급별 정원책정기준</u> (제3조제2항 관련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1. 일반직 공무원</p> <p>⋮</p>	<p>1. 일반직 공무원</p> <p>⋮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2. 기능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급</u>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0급</u>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율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30%</u>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18%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이내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이상</td><td>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5급	6급	7급	8급	<u>9급</u>	<u>10급</u>	비 율	1%	7%	22%	22%	<u>30%</u>	<u>18%</u>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	<p>2. 기능직공무원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급</th>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9급</u>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비 율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2%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48%</u></td>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이내</td>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이상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5급	6급	7급	8급	<u>9급</u>	비 율	1%	7%	22%	22%	<u>48%</u>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
구 분	5급	6급	7급	8급	<u>9급</u>	<u>10급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	7%	22%	22%	<u>30%</u>	<u>18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5급	6급	7급	8급	<u>9급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율	1%	7%	22%	22%	<u>48%</u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내	이상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</p> <p>⋮</p>	<p>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</p> <p>⋮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4. 소방직공무원</p> <p>⋮</p>	<p>4. 소방직공무원</p> <p>⋮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5. 별정직공무원</p> <p>⋮</p>	<p>5. 별정직공무원</p> <p>⋮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공무원법

제4조(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)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고, 기능직공무원은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한다.

②~④ (생략)

부칙 <법률 제10700호, 2011.5.2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, 제25조의2제2항, 제41조, 제63조제2항제4호, 제64조제8호 및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3조(공무원의 직급구분 등) ①~② (생략)

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, 그 직군·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2와 같다.

부칙 <대통령령 제23093호, 2011.8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 제3항, 제33조제1항, 제33조의2제2항·제3항, 별표2, 별표 3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(이하 “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”이라 한다)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
③~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본청 · 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 · 도의 5급 이하(시 · 군 · 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③~⑤ (생략)